판매업 허가신청 안내 매뉴얼



특수
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

1. 총포등 판매업 허가신청 안내 ····· 3

2. 판매업의 시설기준 안내 ····· 6

3. 판매업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 7

4. 서식 ····· 12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13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14

○ 붙임.1 판매업 허가신청서 ····· 15

○ 붙임.2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17

○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18

○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19

1 총포등 판매업 허가신청 안내

□ 허가대상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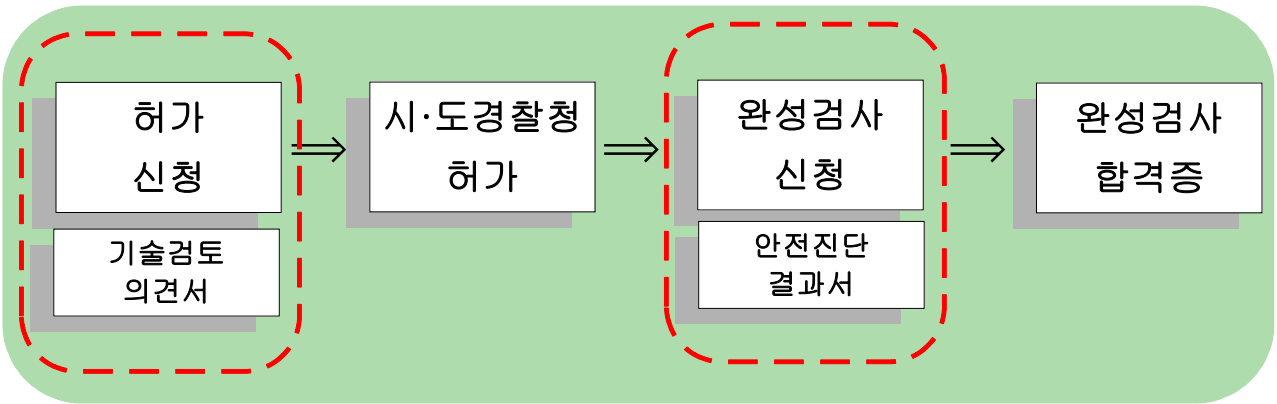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

○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변경

□ 허가권자 (법 제6조)

○ 판매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 허가절차



○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관청의 요구시 제출**

□ 허가신청 서류 (판매업 허가, 시행규칙 제16조)

○ 신청 :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총포담당)

○ 구비서류

1. 판매업허가 신청서.(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함
     가. 판매업소의 위치, 구조, 설비
     나.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다. 관리 또는 기타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
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각1부.
6. 정보공개동의서(서울시·도청 확인)

□ 변경 허가신청 서류 (판매시설 등의 변경,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신청 :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총포담당)

○ 구비서류

1.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 완성검사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1조)

판매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완성검사 신청 서류

○ 시설기기 배치도 1부.

○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2 판매업의 시설기준 안내

□ 관련법령(시행령 제10조)

-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 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 벽 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
   (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 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 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 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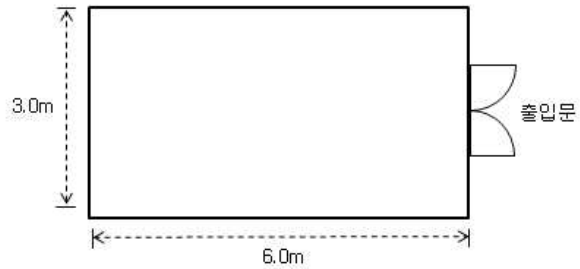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 자물쇠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판매소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함. (법 제64조)

3 판매업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1.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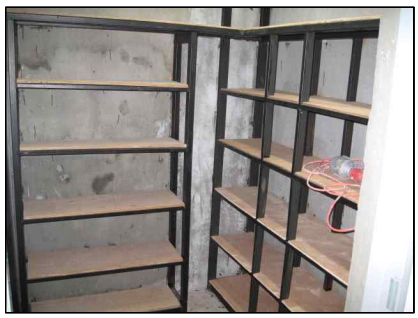
판매업 전용면적 : 18㎡ (3.0m×6.0m)

○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은 16.5㎡ 이상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을 거리측정기 등으로 실측)

2-1. 보관장치(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격납고 출입문



격납고 내부

○ 벽, 천장,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한 후 격납고문은 철제문으로 하고 자물쇠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2-2. 보관장치(나. 콘크리트 벽 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철제금고-자물쇠 2개 설치



뒷부분을 벽에 고정시킴

○ 격납고 재질은 철제로 제작하고 벽 또는 바닥에 고착시켜 격납고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에는 자물쇠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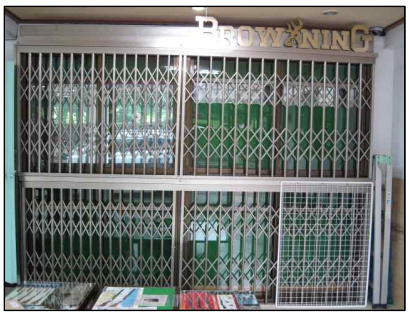
2-3. 보관장치(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 - 철판두께 1.6㎜이상, 무게 450㎏이상)





○ 규격에 적합한 금고를 갖추어야 함.

3. 진열장





○ 진열장 재질은 철제로 제작하고 강화유리문, 철망장치, 내부에 총기의 방아쇠울을 연결할 수 있는 쇠사슬을 비치하고 자물쇠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쇠사슬은 총기의 방아쇠울을 연결하는 용도로 총기의 경우에만 비치함.
- 진열장 규격이 작을 경우 벽 등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착시켜야 함.

4. 실탄격납고





○ 총기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포함)을 보관하는 격납고를 말하는 것으로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비치하여야 함.

가. 실탄 저장소 - 위의 제2호 보관장치 중 “가‘목의 격납고에 준하여야 함.

나. 철제 실탄 격납고 - 철제로 된 재질의 격납고로 하여야 하며 자물쇠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5. 충전기구



○ 공기압축실 실린더(공기탱크)에 압축공기를 충전시키는 콤프레셔를 말하는 것으로 공기총, 마취총 등 발사원리가 공기압축식 총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비치하여야 함.

※ 화약식 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판매업은 제외.

6. 출입구의 문 · 창 등



출입구의 문과 창



방범창이 설치된 창문

○ 판매장 출입구에 유리문과 창이 있을 경우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의 경우는 방범창을 하여야 함.

7. 출입구 바깥문



셧터



철제방화문

○ 출입구에 철판제문을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출입구 유리문 바깥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출입구 안쪽으로 설치 가능.
- 유리문이 없는 건축물 경우 철제방화문 등으로 설치.

8. 경보장치



경보시스템



열감지센서



CCTV

○ 경찰서, 지구대 등과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경비업체의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판매소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함. (법 제64조)

※ 간판을 제외한 판매시설은 전용면적 내 설치(비치) 하여야 함.

4 서식

※ 판매업 허가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다운로드-총포)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gun_list.php?kind=application_gun&kind_sub=list

※ 관련 법령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law01.php?kind=law

□ **붙임 1. 판매업 허가신청서**

□ **붙임 2.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붙임 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붙임 4. 완성검사 신청서**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3호(신규) 및 제16조의2제2항제3호(변경)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기술검토에 체크하고 신청인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기술검토 일정을 협의하여 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기술검토의견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판매업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판매업 등의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기술검토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검토시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측정을 중점으로, 전용면적 외 시설과 방범상 보완할 시설 등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후 갖추도록 의견서를 문서로 발송함.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협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안전진단에 체크하고 신청인, 허가사항 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안전진단 일정을 협의하여 허가받은 판매업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완성검사의 신청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안전진단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후 진행하므로 시설기준, 허가시 허가조건, 기술검토시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문서로 발송함.

붙임1 **판매업 허가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

[ ]총포 [ ]도검 [ ]판매업
[ ]화약류 [ ]분사기 [ ]임대업 허가신청서
[ ]전자충격기 [ ]석궁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호	
	사무소 소재지	
	판매업(임대업)명	
	판매소(임대업소) 소재지	
	판매(임대)종류	월 판매(임대) 예정량
	보관 또는 저장방법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업소(임대업소)의 위치・구조・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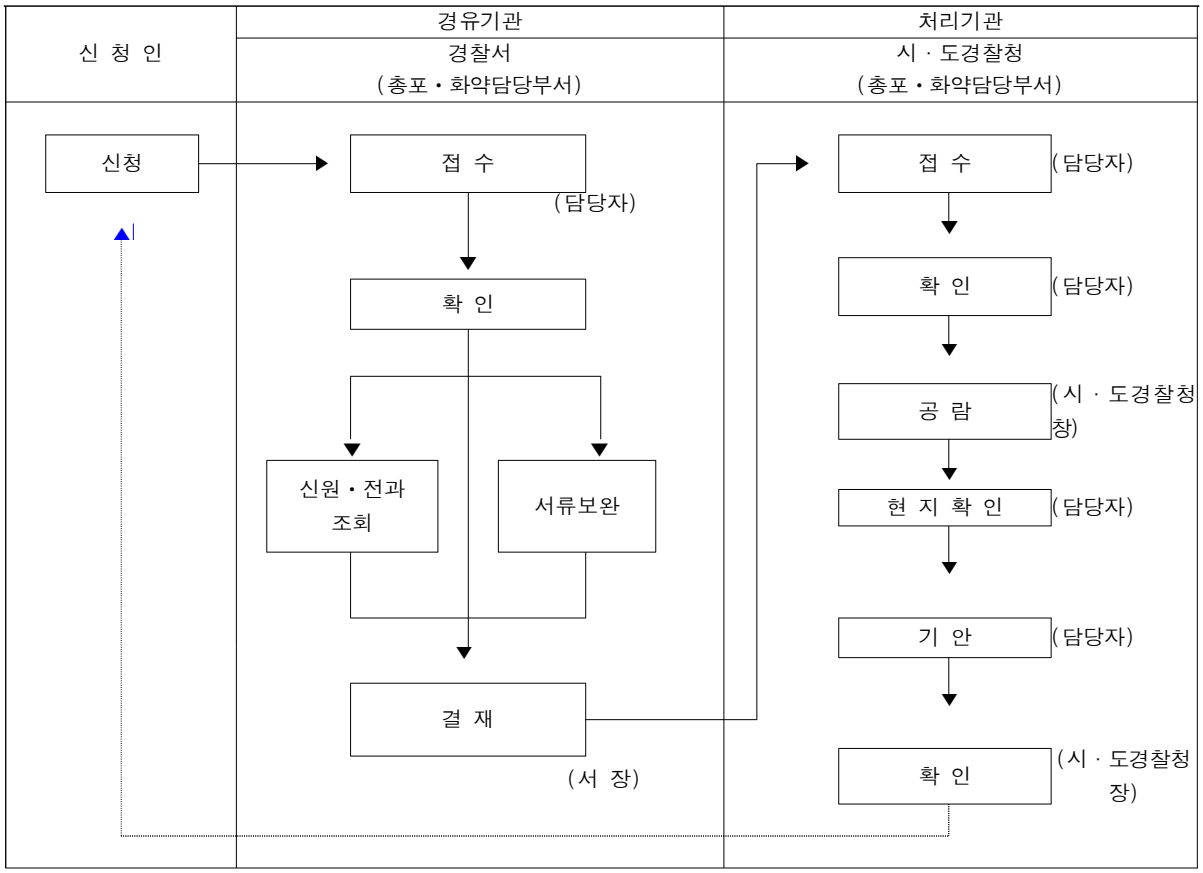
나. 판매하려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임대하려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다. 관리 또는 그 밖에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안전교육계획서(화약 판매업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수수료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 임대업 허가: 15,000원
2. 화약류 판매업 허가: 20,000원

붙임2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변경신청 사항	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 . .
	변경 전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5,000원

210㎜×297㎜[백상지 80g/㎡]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기술검토 □ 안전진단 신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번호			
	처리부서	총포안전처			
	담 당 자				

① 신 청 인	성 명/회사명	(Tel: Fax:)
	주 소	(우편번호:)
② 시설의 종류		
③ 허 가 사 항		
④ 기 타		

* 위와 같이 시설(제조, 수리, 판매, 임대, 사격장)의 □ 기술검토 □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허가증 1부
2.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 - 910004 - 028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수 수 료 : 제조업소[825,000원(부가세 포함)], 수리, 판매, 임대업소[385,000원(부가세 포함)]
   사격장[종목당 495,000원(부가세 포함)]

* 홈페이지 WWW.GESTA.OR.KR
TEL : 02-3272-4102
FAX : 02-3272-4101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5.31>

완성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준공 연월일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월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첨부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